

쓰레기소각장건설에따른조정결의안

의안번호	198
의 결 년 월 일	93. 9. 10 (제22회)

제출년월일 : 93. 9. 10

제 출 자 : 사회산업위원회

1. 제안이유

- 중동신도시에 건설중인 쓰레기 소각장이 인근 주민과 대립 상태에 있다보니 공사중단 상태에 있고,
- 주민이 원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여 원만한 공사 추진과 주민 피해를 줄여 보고자 함에 있음.

2. 주요골자

-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청원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나 성의없는 답변이 있었으며,
-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될 때까지 소각 가능하고 열병합 발전소, 산업폐기물 처리장 등 혐오시설이 삼정동 인근에 집중됨으로 주민 피해 의식 잠재
- 6개월 이내 환경영향평가 우선 실시

3. 결 의 안 : 별 칙

쓰레기소각장건설에따른조정결의(안)

오늘 부천시의회는 중동 신도시에 건설중인 쓰레기 소각장에 대하여, 더 이상 시의 강행 의지와 주민과의 소모적이고 강압적 분위기의 대치상태를 보고 지나칠 수 없이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한다.

1. 부천시의회는 시의 의지와 주민의 요구에 대한 합의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 왔다.
2. 부천시의회는 주민의 청원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공청회,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 토의를 거쳐 제21회 임시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의견을 모아 집행부로 제출하였다.

3. 이에 대해 집행부는 적법한 과정을 거쳐 승인을 받아 왔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경우 상당기간 시기가 소요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을 우려하여 사실상 의회의 의견을 거부하였다.

4. 우리는 집행부 측에서 주장하는 적법한 절차가 형식에 치우쳐 주민과의 사실상 협의과정을 거치지 못하였고, 소각장 설립계획이 터무니없이 잘못된 기초자료와 중장기 계획의 부재속에 추진되어 왔음을 인정한다.

또한 쓰레기는 분리수거가 정착되어 시행된 때 소각이 되어야 하며, 처리시설은 충분히 공해방지 대책이 보장된 속에서 지어져야 하고, 열병합발전소와 산업폐기물처리장 등 혐오시설이 이 지역에 집중되므로써 인근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와 박탈감이 보완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결론을 갖고 있다.

5. 따라서 우리는 하나의 소각장이 세워지더라도 제대로 세워져야 한는데 뜻을 모으고, 법적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로서의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이 지역에 대한 공해현황과 대책, 저감방안과 사후관리 등에 관한 일체의 연구와 대안, 주민과 시 행정당국간의 갈등 해소방안, 그리고 사회 경제적 영향의 평가와 이에 따른 대책을 포함한 조사연구가 우선 수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6. 우리는 현재 92년 12월부터 공사가 진행중이고 93년 7월경에 중지되었으나 상당부분 진척된 현시점에서, 시 제정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며 또한 가능한 깨끗한 환경 속에 살기를 바라므로 이에대한 판단을 전문가와 학자의 도덕과 양심에 맡길 것을 결의한다.

최소한의 기초공사의 마무리와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포함한 일체의 사항을 6개월 이내의 최단기간 내에 조사연구할 것을 의뢰하고, 아울러 이 결과에 대한 시 당국과 주민의 일체 승복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7. 하루 아침에 좋은 부친을 이룰 수는 없지만 급하다고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라고 본다.

1년 가까이 끌어온 주민과 시측의 갈등 그리고 소모적 대치를 타당성있고 합리적 의견으로 종결지음으로써, 부천시의회는 70만 시민의 존경속에 책임감과 권위를 갖고 맑고 환기찬 부천, 시민속에 신뢰받는 행정을 이끌어내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되고 후손에게 존경받는 오늘의 부친을 만들어 갈 것이다.

1993년 9월 10일

부 천 시 의 회 의 원 일 동